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 수립 및 육성·지원 총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 확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침해사고 조사·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윤리권익보호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호, 2025.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해양수산사무관 직렬을 추가하며 국립전파연구원의 사무운영직렬 1명(6급 1명), 열관리운영직렬 1명(9급 1명)과 중앙전파관리소의 사무운영직렬 1명(9급 1명), 열관리운영직렬 1명(9급 1명)을 각각 행정·기술직렬 정원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초원천연구정책관·공공융합연구정책관 및 연구성과 혁신관으로”를 “기초원천연구정책관·미래전략기술정책관 및 연구성과 혁신관으로”로, “기초원천연구정책관·공공융합연구정책관 및 연구성과 혁신관은”을 “기초원천연구정책관·미래전략기술정책관 및 연구성과 혁신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1호까지, 제21호의2 및 제21호의3”을 “제17의2호까지, 제75호부터 제8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2호부터 제44호”를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8호부터 제43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1조제3항제45호부터 제81호”를 “제11조제3항제44호부터 제74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연구개발정책과·기초연구진흥과·원천기술과·양자혁신기술개발과·첨단바이오기술과·공공융합기술정책과·원자력연구개발과·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연구성과혁신정책과·연구산업진흥과·지역과학

기술진흥과 및 연구기관혁신지원팀을”을 “연구개발정책과·기초연구진흥과·원천기술과·양자혁신기술개발과·연구기관혁신정책과·미래전략기술정책과·첨단바이오기술과·원자력연구개발과·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바이오융합혁신팀·연구성과혁신정책과·연구산업진흥과·지역과학기술진흥과 및 연구인프라혁신과를”로,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을 “바이오융합혁신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14항을 제2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을 제16항으로 하며,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연구기관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정책 수립 및 육성·지원 총괄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과학기술 관련 연계·협력 지원
3.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의 자체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제도 운영·발전
5.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능의 정립·조정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연계 활성화 지원
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지원 등 인력 관련 시책의 수립·추진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 연구·기술인력 교류 및 활용사업의 추진 및 지원
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재정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범부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제13항(중전의 제11항)제23호 중 “정보통신기술”을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바이오 원천기술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7조제13항(중전의 제11항)제27호부터 제42호까지 및 제4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융합기술정책과장”을 “미래전략기술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3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래전략기술 정책 목표·방향 설정 및 관련 시책의 수립·운영
2. 미래전략기술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3. 미래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및 성과 제
고
4. 미래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 조사·분석
5. 미래전략기술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제12항제32호(중전의 제27호) 중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을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중전의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장”을 “연구인프라혁신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장”을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중전의 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을 “바이오융합혁신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데이터기반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제도 마련
2.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3. 생명연구자원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의 종합 관리 및 활용체계 조성
5.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보전 및 전송에 관한 표준화 추진
6.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등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육성
7. 생명연구자원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8. 생명연구자원 분야 국제협력 증진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등 관리
10. 생명연구자원 분야 부처 간 연계 사업 추진
11.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실태 조사
12.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 및 제도의 운영·발전
13.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허가·승인 등 안전관리
14.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수출통보·경유신고 및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신고
15.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의 승인
16.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17.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에 관한 사항

18.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관련 교육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19.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 체계의
구축·운영

제10조의 제목 “(네트워크정책실)”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네트워크정책실장”을 각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네트워크정책실에 네트워크정책과·디지털기반안전과·정보보호기획과·정보보호산업과·사이버침해대응과·통신정책기획과·통신경쟁정책과·통신이용제도”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에 네트워크정책과·디지털기반안전과·정보보호기획과·정보보호산업과·사이버침해대응과·사이버침해조사팀·통신정책기획과·통신경쟁정책과·통신이용제도”로, “보한다”를 “보고, 사이버침해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예방·대응”을 “예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예방·대응체계”를 “예방체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사이버침해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간 분야 침해사고 조사·대응 정책의 수립·총괄
2. 민간 분야 침해사고 조사·대응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민간 분야 침해사고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예보·경보의 발령에 관한 사항
4. 민간 분야 침해사고의 원인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5. 민간 분야 침해사고 피해확산 방지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조사에 관한 사항
7. 민간 분야 침해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8. 민간 분야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관사항과 관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10. 민간 분야 침해사고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침해사고 대응기관 협력과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제8호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1명)”을 “1명),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789”를 “795”로, 별정직 계 “5”를 “6”으로,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을 “2”로, 일반직 계 “780”을 “785”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8”을 “49”로 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68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280”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환경연구관·시설연구관 278”를 삭제,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사 · 해양수산연구사
· 기상연구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213”을 “215”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89”를 “795”로, 별정직 계 “5”를 “6”으로,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을 “2”로, 일반직 계 “780”을 “785”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8”을 “49”로 하고,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71 다음에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298”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항공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296”를 삭제,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

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임업연구사·해양수산연구사·기상연구사·환경연구사·시설연구사 “192”를 “194”로 한다.

별표 5 중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51”을 “52”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을 “4”로, 사무운영주사 “2”를 “1”로, 열관리운영서기보 “1”을 “0”으로 한다.

별표 6 중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49”를 “50”으로,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을 “4”로, 사무운영주사 “2”를 “1”로, 열관리운영서기보 “1”을 “0”으로 한다.

별표 7 중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5”를 “37”로, 열관리운영서기보 “1”을 “0”으로, 사무운영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8 중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3”을 “35”로, 열관리운영서기보 “1”을 “0”으로, 사무운영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82”를 각각 “83”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80”을 “81”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평가기간란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3 중 2. 제33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중 “연구기관혁신지원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을 “과학기술안전기반팀”으로,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을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으로,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 미래인재정책과장”을 “미래인재정책과장”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6년 5월 31일”을 “2028년 5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6항, 제10조제11항부터 제18항까지, 별표7 및 별표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부칙 제1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2호 부칙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제14조제3항제8호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제8조의2제6항제6호·제17호·제18

호, 같은 조 제7항제7호 및 같은 조 제8항 제9호·제11호·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바이오융합혁신팀 및 사이버침해조사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부터 바이오융합혁신팀장 및 사이버침해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첨단바이오기술과장 및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① (생략)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u>기초원천연구정책관 · 공공융합연구정책관 및 연구성과혁신관으로</u> 하며, <u>기초원천연구정책관 · 공공융합연구정책관 및 연구성과혁신관</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 ----- ----- ----- <u>기초원천연구정책관 · 미래전략기술정책관 및 연구성과혁신관으로</u> ----- <u>기초원천연구정책관 · 미래전략기술정책관 및 연구성과혁신관</u> 은 ----- ----- ----- --.
③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u>제21호까지, 제21호의2 및 제21호의3의 사항에</u>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③ ----- ----- ----- -- <u>제17의2호까지, 제75호부터 제81호</u> ----- -----.
④ <u>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2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u> 관하	④ <u>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8호부터 제43호까지의</u> -----

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연구성과혁신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5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연구개발정책실에 연구개발정책과 · 기초연구진흥과 · 원천기술과 · 양자혁신기술개발과 · 첨단바이오기술과 · 공공융합기술정책과 · 원자력연구개발과 ·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 ·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 · 연구성과혁신정책과 · 연구산업진흥과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및 연구기관혁신지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⑩ (생략)

<신설>

--.

⑤ -----

--- 제11조제3항제44호부터 제74호-----
-----.

⑥ ----- 연구개발정책과 · 기초연구진흥과 · 원천기술과 · 양자혁신기술개발과 · 연구기관혁신정책과 · 미래전략기술정책과 · 첨단바이오기술과 · 원자력연구개발과 ·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 · 바이오융합혁신팀 · 연구성과혁신정책과 · 연구산업진흥과 · 지역과학기술진흥과 및 연구인프라혁신과를 ---

----- 바이오융합혁신팀장

-----.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연구기관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정책 수립 및 육성·지원 총괄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과학기술 관련 연계·협력 지원
3.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 연구기관의 자체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제도 운영·발전
5.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능의 정립·조정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⑪ 첨단바이오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2. (생 약)

23. 정보통신기술 기반 바이오 원천기술의 육성·발전 정책의 수립과 연구·개발의 지원

기관 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연계 활성화 지원

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지원 등 인력 관련 시책의 수립·추진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 연구·기술인력 교류 및 활용사업의 추진 및 지원

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재정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1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 관련 범부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⑬ -----
-----.

1. ~ 22. (현행과 같음)

23.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신 설>

24. (생 략)

25. 데이터기반 바이오 관련 연
구·개발 지원 및 제도 마련

26.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본계
획 수립·추진

27. 생명연구자원 관련 법령·
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개
발사업 지원

28.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
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
보의 종합 관리 및 활용체계
구성

29.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
보의 수집·보전 및 전송에
관한 표준화 추진

30.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
관 등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
관의 지정 및 육성

31. 생명연구자원 분야 전문인
력의 양성

32. 생명연구자원 분야 국제협
력 증진

24.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바이오 원천기술의 육성
을 위한 인프라 구축

25. (현행 제24호와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 승 인 등 관리	<삭 제>
34. 생명연구자원 분야 부처 간 연계 사업 추진	<삭 제>
35.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실태 조사	<삭 제>
36.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 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및 제도의 운영·발전	<삭 제>
37.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 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허 가·승인 등 안전관리	<삭 제>
38.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 물체의 수입신고·수출통보· 경유신고 및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신고	<삭 제>
39.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 물체의 개발·실험의 승인	<삭 제>
40.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 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삭 제>
41.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 물체 심사에 관한 사항	<삭 제>
42.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관	<삭 제>

련 교육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43.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 생물체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 체계의 구축·운영

⑫ 공공융합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 26. (생 략)

27. 그 밖에 공공융합연구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⑬ (생 략)

⑭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장은

<삭 제>

⑫ 미래전략기술정책과장-----
-----.

1. 미래전략기술 정책 목표·방향 설정 및 관련 시책의 수립·운영

2. 미래전략기술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3. 미래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및 성과 제고

4. 미래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 조사·분석

5. 미래전략기술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 31. (현행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와 같음)

32. -----
-- 미래전략기술정책관 ---

⑭ (현행 제13항과 같음)

⑯ 연구인프라혁신과장-----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⑮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5. (생략)

⑯ ~ ⑲ (생략)

⑲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
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정
책 수립 및 육성·지원 총괄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과학기
술 관련 연계·협력 지원

3.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
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
연구기관의 평가

4.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
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
령·제도 운영·발전

5.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
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

-----.

1. ~ 13. (현행과 같음)

⑮ 핵융합에너지환경기술과장-
-----.

1. ~ 25. (현행과 같음)

⑰ ~ ⑲ (현행 제16항부터 제1
8항까지와 같음)

⑯ 바이오융합혁신팀장-----
-----.

1. 데이터기반 바이오 관련 연
구·개발 지원 및 제도 마련

2.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3. 생명연구자원 관련 법령·제
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개발
사업 지원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
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
의 종합 관리 및 활용체계 조
성

5.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
의 수집·보전 및 전송에 관
한 표준화 추진

6.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u>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u> 7. <u>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자율적·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u> 8. <u>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기능의 정립·조정에 관 한 사항</u> 9. <u>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 연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과 의 협력·연계 활성화 지원</u> 10. <u>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u> 11. <u>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비정규직 지원 등 인 력 관련 시책의 수립·추진</u> 12. <u>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해외 연구·기술인력 교류 및 활용사업의 추진 및 지원</u> <u><신 설></u>	<u>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 관 등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 관의 지정 및 육성</u> 7. <u>생명연구자원 분야 전문인력 의 양성</u> 8. <u>생명연구자원 분야 국제협력 증진</u> 9. <u>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생 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등 관리</u> 10. <u>생명연구자원 분야 부처 간 연계 사업 추진</u> 11. <u>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실태 조사</u> 12. <u>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 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추진 및 제도의 운영·발전</u> 13. <u>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 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허 가·승인 등 안전관리</u>
--	--

<u><신 설></u>	14.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수출통보·경유신고 및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신고
<u><신 설></u>	15.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의 승인
<u><신 설></u>	16.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u><신 설></u>	17.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에 관한 사항
<u><신 설></u>	18.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관련 교육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u><신 설></u>	19.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화 체계의 구축·운영
제10조(네트워크정책실) ①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u>네트워크정책실장</u> 밑에	제10조(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① <u>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u>----- -----. ② ----- ----- ----- <u>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u>

두는 보좌기관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및 통신정책관으로 하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및 통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통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7호 및 제36호부터 제7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삭 제

⑥ 네트워크정책실에 네트워크정책과 · 디지털기반안전과 · 정보보호기획과 · 정보보호산업과 · 사이버침해대응과 · 통신정책기획과 · 통신경쟁정책과 · 통신이용제도과 및 통신자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실장 -----

-----.

③ -----

----- 정
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④ -----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⑥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에 네트워크정책과 · 디지털기반안전과 · 정보보호기획과 · 정보보호산업과 · 사이버침해대응과 · 사이버침해조사팀 · 통신정책기획과 · 통신경쟁정책과 · 통신이용제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 ⑩ (생략)

⑪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간 분야 침해사고 예방·대응 정책의 수립·총괄
2. 민간 분야 침해사고 예방·대응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민간 분야 침해사고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예보·경보의 발령에 관한 사항
4. 민간 분야 침해사고의 원인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5. 민간 분야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침해사고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침해사고 대응기관

-- 보하고, 사이버침해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
-----.

1. ----- 예방 -----

2. ----- 예방체계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협력과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 12. (생략)

14. ~ 28. (생략)

<신설>

3. ~ 7. (현행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9. ~ 23. (현행 제14호부터 제28호까지와 같음)

⑫ 사이버침해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간 분야 침해사고 조사·대응 정책의 수립·총괄

2. 민간 분야 침해사고 조사·대응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민간 분야 침해사고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및 예보·경보의 발령에 관한 사항

4. 민간 분야 침해사고의 원인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5. 민간 분야 침해사고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조사에 관한 사항

7. 민간 분야 침해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이행

	<u>점검에 관한 사항</u> 8. <u>민간 분야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9. <u>소관사항과 관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u> 10. <u>민간 분야 침해사고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u> 11. <u>국내외 침해사고 대응기관 협력과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u>
<u>⑫ ~ ⑮ (생략)</u> 제14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①·② (생략) ③ 연구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의 결과와 <u>기획재정부</u> 예산편성과의 연계 협의 9. ~ 13. (생략)	<u>⑬ ~ ⑯ (현행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와 같음)</u> 제14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8. ----- ----- <u>기획예산처</u> ----- 9. ~ 1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제27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3조(한시정원) ① 삭제 ②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공공청사 건립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별표 13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앙전파관리소에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7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명),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 제33조(한시정원) ② ----- ----- ----- ----- ----- ----- <u>2027년 12월 31일</u>-----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
---	---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u>연구기관혁신지원팀</u>, <u>과학기술안전기반팀</u> 및 디지털포용정책팀은 2027년 9월 11일 까지 존속하고, 2027년 9월 12일 이후부터 <u>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u>, <u>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u> 및 <u>디지털포용정책팀장</u>이 분장하는 사항은 <u>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u>, <u>미래인재정책과장</u> 및 <u>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u>이 각각 분장한다.	----- ----- ----- <u>과학기술안전기반팀</u> ----- ----- ----- ----- ----- <u>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u> ----- ----- ----- <u>미래인재정책과장</u>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은 <u>2026년 5월 31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 ----- ----- <u>2028년 5월 31일</u> ----- -----.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789		795	+6	
별	정	직 계	•		•		
			•		•		
			5		6	+1	
장	관	정 책 보좌관(3급	•		•		
또는	4급	상당)	1		2	+1	
일	반	직 계	•		•		
			•		•		
			780		785	+5	
서	기	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		
			•		•		
			48		49	+1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 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 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항공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해양 수산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 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 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 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신 설>	280	+280
---	--------------------	------------	-------------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u> <u>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u> <u>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u> <u>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u> <u>기상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u> <u>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u> <u>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항공</u> <u>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u> <u>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u> <u>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u> <u>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u> <u>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u> .	278 .	<u><삭 제></u> .	-278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 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 생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 사 또는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 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 사 · 해양수산연구사 · 기상연구 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 ·	<u>213</u> · ·	<u>215</u> · ·	+2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789</u>	• <u>795</u>	+6
•	•	•	
•	•	•	
별정직 계	<u>5</u>	<u>6</u>	+1
•	•	•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u>1</u>	<u>2</u>	+1
•	•	•	
•	•	•	
일반직 계	<u>780</u>	<u>785</u>	+5
•	•	•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48</u>	<u>49</u>	+1
•	•	•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 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 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항공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해양 수산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 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 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 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	<신 설>	298	+298
---	--------------------	------------	-------------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u> <u>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u> <u>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u> <u>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u> <u>기상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u> <u>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u> <u>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항공</u> <u>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u> <u>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u> <u>연구관 · 농업연구관 · 임업연구</u> <u>관 · 해양수산연구관 · 기상연구</u> <u>관 · 환경연구관 · 시설연구관</u> .	296 .	<u><삭 제></u> .	-296 .
---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 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 생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 사 또는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 연구사 · 농업연구사 · 임업연구 사 · 해양수산연구사 · 기상연구 사 · 환경연구사 · 시설연구사 · ·	<u>192</u> · ·	<u>194</u> · ·	+2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 · <u>51</u>	· · <u>52</u>	+1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 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 <u>3</u>	· · <u>4</u>	+1
· · 사무운영주사	· · <u>2</u>	· · <u>1</u>	-1
· 열관리운영서기보	· <u>1</u>	· <u>0</u>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 ·	· · <u>49</u> · ·	· · <u>50</u> · ·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 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3</u>	<u>4</u>	+1
· · 사무운영주사 ·	· · <u>2</u> ·	· · <u>1</u> ·	-1
열관리운영서기보	<u>1</u>	<u>0</u>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 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35</u>	<u>37</u>	+2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1</u>	<u>0</u>	-1
사무운영서기보	<u>6</u>	<u>5</u>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 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33</u>	<u>35</u>	+2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1</u>	<u>0</u>	-1
사무운영서기보	<u>6</u>	<u>5</u>	-1

[별표 9]

국립중앙과학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82</u>	• <u>83</u>	+1
일반직 계	<u>82</u>	<u>83</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0</u>	<u>81</u>	+1

[별표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1조 관련)

조 직	현 행	개정안	증 감
1.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윤리권익보호과 · ·	2025년 12월 31일까지 ·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별표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3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2. 제33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 •	• • <u>2. 제33조 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u> • •	• • <u>2. 제33조 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u> • •	